## 포상금지급신청서

( 앞쪽)

							( 앞쪽)
접수일자		접수번호		처리기간	포상금 지급 결정	후 1개월	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		
	주소(체류지)						
	전화번호						
신고 또는 고발한 범법행위의 내용	신고일자						
	신고 • 고발기관						
	범법행위자						
	범법행위의 유형						
	범법행위 장소						
포상금액	※ 신고 또는 고발인이 적습니다.	2인 이상인 경우로서 포상	금 배분방법에	관하여 합의	비한 경우에는 각각	·지급받을	금액을
<u></u> 수령							
계좌번호							

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## **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** 귀하

제출서류	1.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(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	수수료
	2.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(2인 이상이 함께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	없음
	4 22 2 7 7 3 2 3 7 7 7 7 7	

## 포상금 안내

- ※ 포상금은 「공인중개사법」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, 등록증 양도·대여자 등)를 행정기 관이 적발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으로서,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.
- ※ 따라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, 조회에 따른 시간의 소요 및 예산상의 사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